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8. 18 선고 2020가단126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복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성

변 론 종 결 2021. 7. 7.

판 결 선 고 2021. 8.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E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0. 10. 27.자 매매계약을 61,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28,080,000원, 원고 B에게 16,500,000원, 원고 C에게 16,82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F, G는 2011년경부터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게임기 사업을 하다가, 2015년 9월경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같은 사업을 계속하였다.

나. H에서 I로 이어진 위 사업의 영업본부는 1본부, 2본부, 3본부, 5본부의 4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E는 2012. 10. 2.부터 H의 판매원이 된 후 2013. 9월경 실장으로 승진한 다음 I의 과장(5본부)으로 2017. 1. 5.까지 근무하면서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업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들은 H와 게임기 사업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게임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한 투자자이다.

라. E는 원고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H 및 I의 게임기 해외설치사업 투자금으로 1구좌당 1,100만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미국 텍사스 주에 설치한 후 그 운영이익으로 3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 내지 60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아래와 같이 H와 게임기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원고	계약일자	게임기 대수	투자금액
A	2016. 8. 3.	7대	7,700만원
	2016. 11. 2.	1대	1,100만원
	2016. 12. 5.	1대	1,100만원
B	2016. 12. 23.	3대	3,300만원
C	2016. 12. 24.	3대	3,300만원
	2016. 12. 23.	2대	2,200만원

마. 수사기관은 H 및 I의 게임기 사업에 관한 투자사기 등 혐의를 인지하고 2017년 1월 초경부터 F, G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였고, 위 사업은 이 무렵 중단되었다. 위 수사결과에 따라 F, G는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24, 277(병합), 496(병합)으로 기소되어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483) 및 상고심(대법원 2018도11903)을 거쳐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다만,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변경된 부분이 있다).

F, G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

F, G는 공모하여 2011년 4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H의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를 1,100만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이를 미국 텍사스 주에 설치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100만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 내지 60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3년만에 투자금 1,100만원당 1,800만원 내지 2,160만원을 지급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업체가 수신한 투자금 중 게임기 구입 명목으로 사용한 돈은 일부에 불과했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수익사업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금액은 없었다.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였을 뿐 위와 같은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었다. 이처럼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같이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바. E도 원고들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행위와 관련하여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과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E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사건번호	죄명	범죄사실 요지	형량	진행 및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437, 97 (병합), 521(병합), 2019고합222(병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F, G 등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행 위에 가담하고, 유사수 신행위를 업으로 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19노1945), 상고기각 (2020도1370)

사. E은 자신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20. 10. 27.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20.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한편 원고들은 E 및 F, G 등을 상대로 E 및 F, G 등이 유죄판결을 받은 위 범죄사실과 관련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19937), 위 법원은 원고들이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과실이 있고, 일부 수령한 수익금이 있음을 고려해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를 하여 ‘E은 F, G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8,080,000원, 원고 B에게 16,500,000원, 원고 C에게 16,82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제1항 기재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E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E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을가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E이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채무액의 합은 6,410만원인 사실, E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강원 평창군 J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0년경 위 J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83,179,200원인 사실, 위 J 토지에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채권최고액 4,800만원, 근저당권자 K조합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E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었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E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채무자인 E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 내지 을가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조합, L은행, M단체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가 E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거나 거래를 한 내역이 있어 E의 채무관계 또는 신용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피고가 E이 H 또는 I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② 피고는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3억 5,000만원으로 정하였는데, 공시지가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염가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3억 5,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E은 피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잔금으로 자신의 채권자들 및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명중

별지

부동산목록

1. 강원도 평창군
 [도로명주소] 강원도 평창군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스라브 기와잇기마감지붕
 2층 단독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지1층 일반창고 139.84㎡
 1층 일반음식점 134.9㎡
 2층 단독주택 139.84㎡
2. 강원도 평창군 대 289㎡
3. 강원도 평창군 전 623㎡

